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30호 2010. 4. 8

공 고

제2010-248호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목5동 171-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
제2010-25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1
제2010-254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2
제2010-256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13

인사발령

행정직 9급 공무원 휴직(육아)	14
일반직 공무원 휴직(육아)	14
일반직 공무원 휴직(육아)	14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15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발령	15
8급이하 공무원 기동해제 및 전보	16
기술직 공무원(간호8급) 복직	16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248호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면목5동 171-7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4. 9 ~ 2010. 5.10 (30일)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면목5동 주민센터(☎ 2094-6160~2)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2094-211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별첨 : 공람내용

별첨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신 규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16,625.6	17,771.2	증) 1,145.6	구역확대

3. 재건축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확대)지정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및 정비구역 변경(구역확대) 지정 신청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4,082.2㎡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155.9㎡, 어린이공원 1,291.6㎡, 광장 362.2㎡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4.09%
- 용적률 : 299.65%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이하)
- 층 수 : 지상 31~42층, 최고 42층
- 건립세대 : 아파트 3개동 408세대,
- 60㎡이하 : 119세대(29.2%) 85㎡이하 : 217세대(53.2%), 85㎡초과 : 72세대(17.6%)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신 규	면목5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 171-1번지 일대	16,625.6	17,771.2	증) 1,145.6	구역 확대

나. 정비구역 변경 사유

- 사업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08.12.18)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던 면목5동 171-8 만선연립(별도사업 추진 중)의 사업시행자가 별도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동 부지(171-8)를 면목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 부정형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771.2	-	17,771.2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45.6	감1,145.6	-	기존 만선연립 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25.6	증1,145.6	17,771.2	-

나.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결정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625.7	증) 1,145.6	17,771.2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543.4	증) 266.3	2,809.7	15.8%	
	공 원	1,025.3	증) 266.3	1,291.6	7.3%	-
	도 로	1,155.9	-	1,155.9	6.5%	-
	광 장	362.2	-	362.2	2.0%	-
택 지 (획 지)	소 계	14,082.2	증) 879.3	14,961.5	84.2%	-
	택지 (공동주택)	14,082.2	증) 879.3	14,961.5	84.2%	-

2)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23	30~36.3	보조간선도로	6,500	면목동	성수동	일반도로	-	건교738 (63,12,24)
기정	중로	2	a	15	국지도로	167	면목동171-1 (대2-23)	면목동171-9 (중2-119)	일반도로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구분	도면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어린이공원	면목동 171-10번지일원	1,025.3	증)266.3	1,291.6	-	-

다) 광장 (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광장	교통광장	면목동 171-32번지 일원	362.2	-	362.2	존 치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법적기준	기정	증감	변경		
부대 시설	근린생활 시설	구역 동 북측	세대당 6㎡ 이하	2,448.00이하	550.00	증 390.00	940.00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102동 1층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X0.05㎡이상	27.90이상	100.39	감 8.13	92.26	
복리 시설	경로당	102동 1층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X0.1㎡이상	70.80이상	120.00	감 0.89	119.11	
복리 시설	경비실	자동차 출입구 앞	-	-	26.00	증 14.00	40.00	2개소
복리 시설	보육시설	102동 1층	300세대 이상의 경우, 21인 이상수용 보육시설 21인X4.29㎡이상	90.09이상	-	증 135.33	135.33	
복리 시설	문고	103동 1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3조)	33.00이상	-	증 96.86	96.86	500세대 이상
복리 시설	주민공동 시설	썬큰광장 지하	300세대 이상의 경우, 50+(세대수-300)X0.1㎡이상	60.80이상	120.00	증 66.34	186.34	
복리 시설	주민운동 시설	구역 북측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세대수-500)/200X150	-	-	증 223.50	223.50	500세대 이상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구역 동측	100세대 이상일 경우, 300+(세대수-100)X.1㎡이상	608.00이상	638.00	감 3.00	635.00	2개소
복리 시설	휴게시설	구역 남측	1+(세대수 - 500)/500	1개소	2개소	감1개소	1개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625.6	단독주택 용지	16,625.6	면목동171-7 번지일대	60	-	-	60	-	-
변경		17,771.2		17,771.2		61	-	-	61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획	예정법적상한	
기정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625.6	획지1	14,082.2	면목동171-7번지 일대	54,453.201	공동주택	19.20 이하	266.81 이하	-	110m 31층
변경		17,771.2		14,961.5		65,700이하	공동주택	15.00 이하	250.00 이하	300.00 이하	130m 42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p>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건설비율(소형주택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119세대 29.2% (기준 : 2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336세대 82.4% (기준 : 6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80세대 17.6%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전체 연면적의 75.76% (기준 : 50% 이상)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p>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일조확보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적용</p> <p>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p> <p>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에 관한 관련 군부대 협의</p>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p>구역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open space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m 지정</p>								

다)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16,625.6㎡	14,082.2㎡	2,540.7㎡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무상양도면적 = 2,543.4㎡ - 404.4㎡ - 816.0㎡ = 1,323.0㎡ (7.96%)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404.4 + 816.0 = 1,220.4㎡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광장 362.2㎡, 도로 42.2㎡) + 무상양도 면적(816.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용적률 × (1 + 1.3α) = 210% × (1 + 1.3 × 0.0939) = 235.63%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23.0 / 14,082.2 = 0.0939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 용적률 = 266.81% (분양 235.36%, 임대 31.45%)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17,771.2㎡	14,961.5㎡	2,809.7㎡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무상양도면적 = 2,809.7㎡ - 362.2㎡ - 42.2㎡ - 816㎡ = 1,589.3㎡ (8.94%) * 인센티브 제외 면적 = 404.4 + 816.0 = 1,220.4㎡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광장 362.2㎡, 도로 42.2㎡) + 무상양도 면적(816.0㎡)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12% + 210% X [1 + (1.3 X 0.1062)] = 251.00% ≥ 250.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589.3 / 14,961.5 = 0.1062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 용적률 = 299.65% (분양 274.34%, 소형주택 25.31%) 		

5)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폐율을 낮추어 경관확보 ◆ 옹벽과 방음벽, 담장 등 구조물에 담쟁이 등의 식재로 벽면 녹화 	-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 보도·주차장 등을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 조성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바이오툼(생물 소공간) 공간 확보 ◆ 담장의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식재, 화단 설치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 ◆ 동2로(30m) 및 사가정길(30m)변 방음림 설치로 차량소음 대책 마련 	-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 ◆ 수해 : 지구내부로 유입 억제 ◆ 교통 :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 동선 체계 구축 ◆ 재난방지형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 설치 계획 	-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면목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증212	해당사항 없음	-

※ 기존세대수는 단독주택은 1세대,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세대수 적용
 ※ 408(계획세대수)-196(기존세대수)=212세대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가구	가 구 전 체	17,771.2	획지1	면목동 171-7번지일원	14,082.2	증) 879.3	14,961.5	공동주택지
			획지2	면목동 171-7번지일원	1,025.3	증) 266.3	1,291.6	공원
			획지4	면목동 171-9번지일원	1,155.9	-	1,155.9	도로
			획지5	면목동 171-32번지일원	362.2	-	362.2	광장

8)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정비구역 내	-	-	45	59.94㎡이하 45세대	5,415.21㎡ (지상:3,837.50㎡)

■ 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

구 분		계 획	비 고
법적 상한용적률		• 300%	
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용적률		• 250%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량	용적률	• (300% - 250%) X 50% = 25.0% 이상	
	연면적환산	• 25.0% X 14,961.5㎡ = 3,740.38㎡ 이상	
재건축소형주택공급계획		• 공급세대수 : 45 • 공급연면적 : 3,837.50㎡ • 공급용적률 : 25.31%	

공 램 의 견 서

(접수번호 :)

□ 대상사업

안 건	면목동 1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사업위치	중랑구 면목5동 171-7번지 외 81필지

□ 의견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유물건	위 치
	규 모

□ 제출의견

2010. . .

의견제출자 성명 (인)

중 랑 구 청 장 귀 하

■ 위치도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 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상위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계약지출업무 담당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주사”와 “여성업무담당주사”를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직직제 개편 등의 사유 발생에 대한 유연성 확보(안 제24조, 제35조, 제40조)
- “모부자가정” 및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현행화(안 제5조 제1항, 제15조 제1호)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 실시 가능(안 제14조 제6항 신설)
-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의무 명시(안 제16조의 2)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2094-1752)

2010년 4월 8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제16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지급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중랑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나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함(안 제4조제2항)
- 신청기한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중랑구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함(안 제5조제3항)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신설함.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에 비치함(☎2094-1755)

2010년 4월 8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조직의 활성화와 잠재역량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직급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여 인사적채 해소 및 직원들의 사기양양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정원조정 내용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개정전비율	1%이내	7%이내	21%이내	32%이내	32%이내	7%이상
개정후비율	1%이내	7%이내	22%이내	31%이내	32%이내	7%이상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에 비치함(☎2094~0310~4)

2010년 4월 8일

중랑구청장

인사발령

행정직 9급 공무원 휴직(육아)

2010. 4. 1.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지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4.01.~2011.01.31.)	면목본동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직 공무원 휴직(육아)

2010. 4. 4.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연미숙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4.04.~2011.04.03.)	면목제7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일반직 공무원 휴직(육아)

2010. 4. 5.

증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미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0.04.05.~2011.10.04.)	면목제3·8동	지방행정서기

일반직 공무원 신규임용

2010. 4.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장승모	지방공업서기보시보(화공)에 임함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근무를 명함	(신규)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발령

2010. 4.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배영규	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총무과 실무수습)	(신)	(규)
2	김승찬	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총무과 실무수습)	(신)	(규)
3	김민경	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총무과 실무수습)	(신)	(규)
4	김종인	9급 행정직 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 (총무과 실무수습)	(신)	(규)

8급이하 공무원 기동해제 및 전보

2010. 4. 6.

종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정미화	면목제7동 기동근무를 해제함 면목제7동 근무를 명함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지방행정 주사보
2	김미영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기동근무를 해제함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근무를 명함	보건소 의약과	기능 8급 지방사무실무원 (필기)
3	김미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동근무를 해제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도시환경국 주택과	기능 8급 지방사무실무원 (필기)

기술직 공무원(간호8급) 복직

2010. 4. 8.

종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최이녀	복직을 명함 보건소 근무를 명함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간호 서기